

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해철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32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8. 22.

발 의 자 : 박해철 · 김승원 · 박지원
이재관 · 김 윤 · 이훈기
최민희 · 김 현 · 황명선
박선원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하천유지유량의 산정 및 확보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, 임진강, 북한강 등 남북한이 함께 공유하는 하천의 경우 상류인 북한지역에서 방류되는 유량이 하천유지유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, 현행법상 남북한 공유하천의 북한지역 유입유량을 고려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음.

이에 남북한 공유하천의 하천유지유량 산정 시 북한지역에서 유입되는 유량을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, 하천유지유량의 산정과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, 남북 수자원 협력 및 하천환경 보전, 홍수·가뭄 등 재해 예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(안 제51조제1항).

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

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1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하천유지유량에는 임진강과 북한강 등 남북한 공유하천의 북한지역에서 유입되는 유량을 반영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하천유지유량에 관한 적용례) 제5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천유지유량을 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51조(하천유지유량) ① 환경부장관은 제50조제1항에 따른 생활·공업·농업·환경개선·발전·주운 등의 하천수 사용을 고려하여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유량(이하 “하천유지유량”이라 한다)을 정하여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. <후단 신설>	제51조(하천유지유량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이 경우 하천유지유량에는 임진강과 북한강 등 남북한 공유 하천의 북한지역에서 유입되는 유량을 반영하여야 한다.
② ~ ④ (생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